

‘제도경제학’의 제조류 —분류와 상호비교—

백준봉

제도를 주어진 여건으로 간주하고, 가격기구를 통한 경제활동의 조정 및 배분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달리 최근 20여 년간 제도 및 제도변화를 내생적으로 설명하려는 제도경제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제도연구라는 공통의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경향은 단일한 학파라고 할 수 없는, 다양한 이론적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제도경제학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다양한 제도경제학의 연구조류들을 분석 대상, 방법론 그리고 제도진화의 원리를 중심으로 분류·비교한다. 이는 제도경제학의 제조류간 상호교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나아가 경제학의 범위 및 분석능력을 확장하는 계기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I. 머리말

1980년대 이후 시장기구에 대한 믿음과 그에 입각한 경제정책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도 경제적 합리성과 시장균형개념에 입각한 경제학 방법론이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이론에서는 제도를 주어진 여건으로 간주하고 시장 기구의 작동을 분석하는 전통적 흐름과 구별되는 연구경향이 확산되었는 바 제도 및 제도변화를 내생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경향, 이른바 ‘제도경제학’¹⁾이 바로 그것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 1) 본 연구에서 제도이론의 경제학적 연구경향을 사회학, 법학, 정치학, 인류학 등 여타 분과학문의 제도연구와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제도경제학이라 총칭한다. 제도연구의 조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신제도이론, 신제도경제학, 제도연구 프로그램 또는 패러다임 등이 있다. 다른 한편, Eggertsson [22]은 제도경제학의 조류를 안정적 선호, 합리적 선택, 균형분석 등 신고전학파의 핵심적 가정을 유지하면서, 여타 가

최근 20여 년간 국가별 성장유형의 차이 그리고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제도경제학 부흥의 현실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국가간 경제성장 유형 또는 경제성과의 차이는 시장이나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제도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국내의 경제환경과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세계화와 경쟁격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동구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및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 등 최근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은 경제체제의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제도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다른 한편,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제도경제학 연구의 이론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현실경제에 존재하는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주어진 여건으로 간주하며, 가격기구를 통한 경제활동의 조정과 배분적 효율성을 강조한다. 최근 경제학이론의 기술적 분석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학 및 경제모형은 더욱더 추상적으로 되었으며, 제도적 현상에 대한 관심은 멀어졌다 (Coase [16]).²⁾ 제도경제학은 이러한 이론적 경향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 출발하여,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엄격한 가정을 완화하고, 분석에서 배제된 제도의 역할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외부성, 정보, 규모의 경제, 교육 및 훈련 등의 논의도 제도경제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외부성은 가격 또는 시장기구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호의존관계를 의미하며, 정보의 비대칭성도 조직 및 지배구조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특히 1980년대 게임이론의 발전은 제도연구의 수리적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정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Neo-Institutional Economics와, 제한된 합리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하는 New-Institutional Economics로 구별한다. 이러한 구분과 달리 본 연구에서 윌리엄슨이 만들어낸 용어인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 NEI)은 거래비용경제학, 재산권 분석, 계약이론 등 구제도학과 구별되는 연구경향을 총칭하는 것으로,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는 신고전학과 분석틀의 확장·수정이라기보다는 구제도학파의 전통을 잇는 제도연구 조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2)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단점이면서 동시에 장점이기도 하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모형의 수리적 정치함, 최소한의 변수를 사용하여 최대한의 설명을 하려는 간결성(parsimony)을 중시한다. 이는 단순화된 가정들에 입각한 모형 구축을 통해 완전경쟁과 완전예측이라는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기초와 의사결정에서 상대가격의 역할을 보여 주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분석도구로서의 뛰어난 추상성을 가지며, 여타 사회과학의 접근과 비교해서 매우 정교하고 엄밀하지만, 다양한 경제시스템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다원성의 사고방식과 양립할 수 없는 보편적 지향이 있다. 대신 경제외적이라고 가정되는 것이 광범위하며 극대화의 제약조건이 가변적이라는 점이 이론의 탄력적 응용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제도분석을 공통의 관심사로 하는 제도경제학의 제조류에 대한 고찰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제도경제학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윌리엄슨(O. Williamson)과 노스(D. North) 등을 중심으로 한 '신제도경제학' (NIE)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제도경제학의 부흥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분석틀을 수정·확장한 신제도경제학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제도경제학에는 구제도학과, 오스트리아학과, 진화경제학, 그리고 정치경제학 등과 같이 다소 독자적인 이론적 경향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류들을 고찰함으로써 이질적인 제도경제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각 조류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제도분석을 경제학에 재도입하여, 제도경제학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코즈-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을 살펴본다. 특히 시장기구와 구별되는 여타의 조정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경제학의 특징 또는 그것과 전통적 경제학 간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제Ⅲ장에서는 거래비용경제학을 포함한 신제도경제학의 연구경향 그리고 다른 이론적 기원을 갖는 여타의 제도경제학의 조류들을 소개한다. 제도경제학은 제도연구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과등에 있어서 '제도가 중요하다' (institutions matter)는 명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학파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제조류가 존재한다. 이질적인 이론적 조류를 세부적인 내용에 걸쳐 총괄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되는 주요 제도, 방법론적 특징, 제도진화의 원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제도경제학의 조류를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Ⅱ. 경제적 조정메커니즘 분석과 제도경제학의 특징

Langlois [35]에 따르면, 신고전학파는 제도를 배제한 경제이론을 전개한 반면에, 독일의 역사학파와 미국의 구제도학파는 이론적 기반없이 제도를 다루었다는 것이 각각의 문제점이었다.³⁾ 제도경제이론의 구축을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는

3) 구제도학파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자들의 일반적 평가는 그것이 순전히 현실묘사적이며, 반이론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호지슨(G. M. Hodgson)은 Veblen, Commons, Michell 등 구제도학파의 대표자들이 이론적 설명 및 이론발전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구제도학파의 몰락은 베블렌 이후 핵심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극도의 경험주의로 경사되었다는 사실보다도, 20세기 초 본능심리학 및 실용주의 철학에서 행태심리학 및 실증주의 철학으로 사회과학 패러다임이 전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제도연구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⁴⁾

일반적으로 구제도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제도주의 패러다임은 코즈의 선구적 저작(Coase [14], [15]), 즉 거래비용(transaction-costs)과 재산권(property rights)에 대한 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거의 40여 년간 경제학계의 반향을 얻지 못하다가 1970년대 중반 윌리엄슨등에 의해 계승·확장됨에 따라,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코즈-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과 관련된 여타의 논의를 통해 경제적 조정메커니즘(co-ordinating mechanism)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도경제학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특징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1. 거래비용경제학과 경제적 조정메커니즘 분석

1) 거래비용경제학과 경제적 조정메커니즘으로서의 제도

전통적인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시장 메커니즘은 유일하고 보편적인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다.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s)를 고려한다면, 정부개입도 대안적인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다. 즉, 자원배분은 한편으로 왈라스적 일반균형의 보편성에 입각한 시장기구에 의한 조정, 다른 한편으로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및 공공재 등 시장의 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에 의한 조정이라는 이분법에 입각해 있다. 시장·국가 이외의 다른 조정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⁵⁾ 코즈는 Coase [14]에서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가격기구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 즉 거래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⁶⁾ 그리고 기업은 위계조직 내부에서 자원배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장기구와 다른 자원배분 메

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론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를 사로잡은 신고전학과 수리경제학의 등장 때문이었다. Hodgson [29], pp. 166~167.

- 4) 제도경제학의 부흥은 1991년 코즈, 1993년 노스(D. C. North)가 잇달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절정에 달하게 된다. 제도경제학을 광의로 해석하면, 1986년 뷰캐넌(J. M. Buchanan), 1992년 베커(G. Becker)의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 5) 신고전학과적 완전경쟁의 세계에서 기업은 다양한 구성원의 유기적 조직체가 아니라,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 또는 기업가와 같은 단일한 실체로 간주된다. 이는 뉴턴적 물리학의 세계관을 확장·적용한 것으로 수리화와 비교정학적 분석, 이윤극대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에는 유용하지만, 기업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내부조직, 생산의 조직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그 해결, 유인체계의 설정, 기업의 범위 및 동태적 변화과정에는 전혀 답을 주지 못한다. 신고전학과이론 체계에서 기업은 요소시장과 재화시장 간의 접점으로 일종의 블랙박스(black box) 또는 공허한 존재(shadowy figure)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인 기업이론이라기보다는 시장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표 1〉 거래의 유형과 효율적인 지배구조

구 분		투자 자산의 성격		
		비특수적	혼 합 적	매우 특수적
거 래 빈 도	산발적	표준장비의 구매 (시장지배구조)	주문장비의 구매 (삼자지배구조)	플랜트 건설 (삼자 또는 단일 지배구조)
	반복적	표준재료의 구매 (시장지배구조)	주문재료의 구매 (양자지배구조)	특수적 중간재의 계기적 이전 (단일지배구조)

자료 : Williamson [54].

커니즘이라는 것, 또는 기업가적 조정이 시장기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Williamson [53], [54]은 코즈의 거래비용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행위의 조정메커니즘 또는 효율적인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문제를 다루는 거래비용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우선, 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은 신고전학파의 기본적인 행태론적 가정을 수정하였다. 한편으로 완전한 합리성 대신에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사이몬(H. Simon)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수용하였다. 다른 한편 단순한 이기심 대신에 이기심의 가장 강한 형태로서 교활한 자기이익 추구(self-interest seeking with guile)를 의미하는 기회주의(opportunism)를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시장교환을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인 경제적 거래 또는 계약을 분석단위로 설정한다. 거래의 주요차원을 생산적 가치를 회생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자산을 다른 용도로 재배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산특수성 또는 자산전용성(asset specificity), 불확실성(uncertainty), 거래빈도(frequency)로 구분하고, 거래비용의 경제화(economizing)라는 관점에서 거래속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산을 자산특수성에 따라 비특수적, 혼합적, 특수적 성격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산발적·반복적인 거래빈도와 결합하여 여섯 가지 거래유형을 도출한다.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하에서 거래유

6)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은 가격기구를 사용하는 비용, 경제체제의 작동비용(K. Arrow), 일종의 경제체제의 마찰(O. Williamson) 또는 교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도 또는 조직을 창출하고, 운영하며, 그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거래비용에는 시장거래자를 발견하고 거래조건 등을 제시하는 데 드는 탐색(search) 및 정보 비용,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협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협상(bargaining) 및 의사결정(decision)비용, 그리고 계약조건이 준수되는가를 확인하고 계약위반시 강제집행하는 데 드는 감독(monitoring) 및 집행(enforcement)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제도경제학의 핵심적 개념 중의 하나인 거래비용은 그 개념의 모호성과 관찰 및 측정상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형에 따른 효율적 지배구조는 <표 1>과 같다(Williamson [54]). 첫째, 거래빈도와 관계없이 비특수적 자산의 거래에서는 시장지배구조가 효율적이다. 표준화된 비특수적 자산의 거래는 제3자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의 지속 또는 단절간에는 거래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분쟁발생은 법적 소송으로 해결된다. 거래의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으며, 행위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기구가 된다.

둘째, 자산특수성이 높은 경우 기업 또는 위계(hierarchies)라는 단일지배구조(unified governance)가 효율적이다. 이 경우 거래의 중단은 구매자에게 다른 공급자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초래하고, 판매자에게 특수적 자산의 가치하락을 유발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에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 및 이에 따른 기회주의의 통제가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제한된 합리성하에서 완비된 계약(complete contracts) 및 기회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포괄적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거래비용을 줄이고 교환관계에 내재된 기회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의 내부화(internalization) 또는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시장기구와 달리 관리적 명령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기업이 출현하게 된다.

셋째, 자산이 특수적 성격을 갖지만 덜 특이적인(idiosyncratic) 경우 혼합형(hybrid: mixed) 지배구조가 효율적이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 유지가 여전히 중요하므로 시장거래는 한계가 있으며, 단일지배구조는 제도의 조직화와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거래빈도에 따라 혼합형 지배구조 또는 계약에 따른 장기적 거래관계가 효율적이다.

요컨대, 어떤 경제행위가 시장기구 또는 기업내부의 위계적 조정, 아니면 다른 조정메커니즘에 의해 수행될 것인가는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이는 관련된 자산의 특수성 정도에 의해 크게 규정된다. 그런데 조정메커니즘으로서의 제도분석은 조정메커니즘들의 내적 논리,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정메커니즘이 선택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재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시장기구 이외의 조정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제도연구에서는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느슨한 시장의 정의 대신에 다소 제한적으로 시장을 정의한다.⁷⁾ 일반적으로

7) 시장은 경우에 따라 모순적이기도 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장은 특정시점에 특정 재화를 특정한 가격에 인도하겠다는 쌍무적인 협정, 즉 계약의 동의어로 정의되기도 한다. 둘째, 거래장소로서의 시장(marketplace)이라는 구체적 정의이다. 셋째, '물건의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보다 추상적인 정의이다. 시장은 장소로서의 구체성 또는 직관적 내용을 띠기보다는 판매자가 소비자를 두고 상호경쟁하는, 주어진 지리적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즉, 시장은 일종의 주어진 지리적 지역의 총체(예를 들어, 유럽시장) 또는 특정 생산물이나 유사한 대체재의 총체(예를 들어, 자동차시장)를 가리킨다. 넷째, 일련의 개별적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메커니즘으로써의 시장(보이지 않는 손)이다. 다섯째, 경제체제(economic system)로서의 시장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경제

'고전적 시장'(classic market)은 거래당사자와 거래 및 거래를 성사시키는 장치가 다음과 같을 때 나타난다(Williamson [54], Hollingsworth and Boyer [31]). 거래당사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자율적이고, 각 행위자는 공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한다. 거래는 분권화된(decentralized) 정상적인 협상(arm's length bargain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약은 거래당사자들간에 추가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며, 이러한 계약에 의해 거래조건이 결정되고, 결제가 이루어진다.⁸⁾ 계약체결 이후 분쟁의 조정 또는 해결은 법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장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일부만을 포함할 뿐이며, 따라서 여타의 조정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영역이 개방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경제성공에 중립적이거나 또는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적 작동에 경직성을 초래하는 비효율성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달리, 제도를 거래비용의 경제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파악한다. 즉, 제도의 형성과 그 기능을 내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제도분석의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전통적인 시장과 국가 이외의, 조정형태 또는 지배구조를 분석하였다. 거래비용경제학은 기업의 존재이유, 거래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범위, 수직적 통합, 기업내부구조 등 다양한 논의로 확장되었으며, 여타 제도경제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 다양한 경제적 조정메커니즘

경제행위의 조정메커니즘 또는 경제거래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거래비용경제학에 의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기업 및 기업간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적 접근 그리고 사회경제적 접근에 의해 보다 확장되었다. 거래비용경제학은 시장과

의 시장으로의 이행에서는 시장경제는 사적 소유권, 자유경쟁,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여섯째, 사회적 행위자들이 최소한 자원의 배분이나 제한된 지위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으로서의 시장이다. 즉, 상호 대립적인 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합의 또는 거래에 이르게 될 때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카고학파가 합리성, 균형, 시장개념을 확장하여, 결혼, 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용·확장하는 경우 이러한 시장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Boyer [9], [10] 참조.

8) 이는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 공식적 관계에 의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특정 거래당사자간에 관계의 지속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시장거래는 과거 또는 향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매번의 거래에 앞서 거래의 지속여부는 즉석에서 결정한다. 이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계획·행동을 포괄하는 사전적인 계약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또는 시장참가자 누구와 계약하여도 동일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특수적(non-specific)인 자산의 거래, 즉 고도로 표준화된 거래를 상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거래성사에 필요한 각종 제도가 이미 구비되어 있어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전통적 조정형태 외에 조직 또는 기업이라는 조정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조정메커니즘에 대한 많은 연구문헌들은 다소 단편적이며 체계적이지 않지만 이외에도 네트워크와 협회, 공동체라는 대안적인 조정메커니즘을 상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network)는 거래자들이 공식적인 조직에 통합되어 있지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상호 협력·제휴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약관계로 느슨하게 결합된 조정 형태를 지칭한다. “기업은 시장관계라는 바다 속에 계획적 조정이라는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 결합”(Richardson [46])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은 자율적이라기보다 다른 조직과의 상호의존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등과 같이 기업간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 국가, 대학, 협회 등 광범위한 행위자들간에 구성되기도 한다.⁹⁾ 애초에 네트워크는 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준기업(quasi-firm), 장기적 계약관계와 같이 시장과 사적 위계의 중간적·혼성적·과도적 형태로 간주되었으나 점차 고유한 특징을 가진 독자적인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경제행위자간에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시장이나 위계보다 우월한 조정 형태인데, 그것은 네트워크가 이들과 다르기 때문인지 양자의 사이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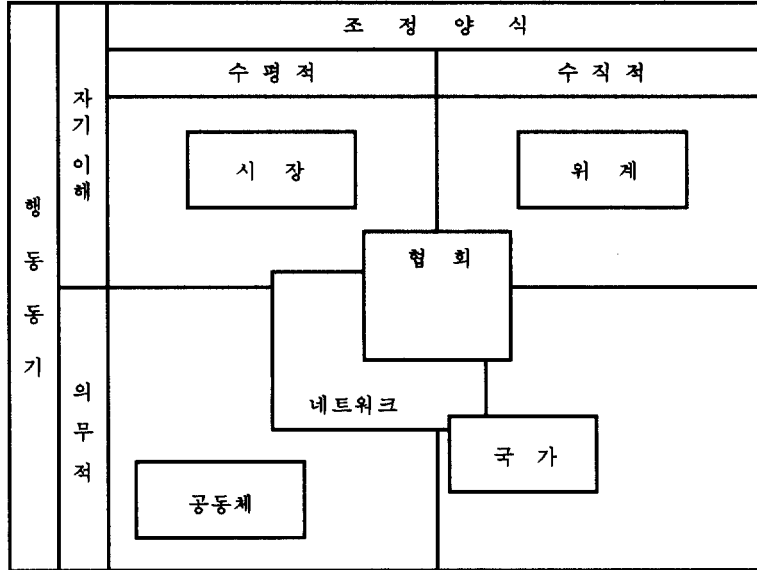
협회(association)는 네트워크, 공동체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적 조직으로서 회원간의 행위를 조정한다. 시장, 위계, 네트워크가 생산자와 중간재공급자, 자본과 노동, 생산자와 고객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들간에 경제적 활동을 조정하는 데 반해, 협회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경제주체들간의 행위를 조정하고 규칙을 강제한다. 협회는 회원간의 협력을 조직·촉진하고, 다른 협회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며,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공공정책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일반적인 협회의 형태는 사업협회와 노조이다.¹⁰⁾

공동체(communities)는 개인 또는 조직의 느슨한 집합체로서 순수한 이기적 계산에 기초하지 않는, 일종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이다. 공동체 내부의 거래는 법적으로

9) 기업간 관계 이외에 광범위한 행위자들을 포괄하여 구성된 네트워크로는 미국의 첨단기술산업에서 민간기업, 대학, 국가간의 제휴관계와 노조, 사업협회, 학교, 국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관련된 독일의 훈련체계 등을 들 수 있다. 독립적 조정메커니즘으로써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Powell [44], OECD [57]를, 기업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다양한 유형구분에 대해서는 Hage and Alter [27]를 참조하시오.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조정메커니즘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전략 및 조직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0) 업종별 협회의 활동은 특히 제품수명주기상 성숙단계에 진입하였거나 본권화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한 산업부문(예를 들어, 섬유, 화학, 반도체 등)에서 활발하다. 노조의 활동은 임금설정, 작업조건 및 직무 규정, 노동시간 결정, 고용수준의 관리 등의 조정과 관련되어 있다. Hollingsworth, Schmitter and Streek [32], p. 7.

〈그림 1〉 경제적 조정메커니즘의 분류



자료 : Hollingsworth and Boyer [31].

집행되지 않는 상호의무 관계에 기초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다른 조정메커니즘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경제학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루어 왔던 조정 형태이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조정메커니즘은 〈그림 1〉과 같이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배치할 수 있다(Hollingsworth and Boyer [31]). 수직적 차원은 인간행위를 규정하는 원리 또는 행위동기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라는 경제학적 시각과 의무 및 사회적 규칙에 대한 순응이 인간행위를 형성한다는 보다 사회학적 관점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수직축의 위로 갈수록 행위의 개별적 성향이 강화되는 반면, 아래로 갈수록 행위의 집단적 성격 또는 공통의 이해에 입각한 행동성향이 강화된다.

수평적 차원은 조정이 행위자들간에 이루어지는 방식 또는 행위자들이 조직에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수평축의 한 극단은 잘 조직된 현물시장에서와 같이 다수의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등한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수평적 조정이며, 다른 극단은 주대리인(principal-agent)간 또는 선도자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같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불균등한 권력에 의한 위계적 형태의 수직적 조정이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 조정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시장기구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제도경제학은 시장기구 이외의 다양한 형태를 다루고 있으

며 이 점이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이다. 신고전학과 모형은 거래비용이 영(零)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거래비용이 영인 세계는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어떠한 정보라도 비용없이 즉각적으로 획득·가공할 수 있는 완전정보와 완전예측의 세계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는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감시·집행할 수 있는 완전한 또는 완비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불이행은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있어서 포괄적이며 집행가능한, '정치적으로 해결된 문제'(a solved political problem)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정은 가격기구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의 조정기구를 상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는 제도가 경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거래비용의 도입은 전통적인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다른 제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비용이 영인 세계는 '마찰이 없는 물리학의 세계'만큼이나 기묘한 것이다. 전통적인 왈라스적 일반균형체계가 시장기구의 작동방식을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해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시장의 실패에 따른 국가의 개입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실패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경제학은 과거 무시되거나 배제되었던 경제분석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기구 이외의 다양한 조정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 제도경제학의 일반적 특징

거래비용경제학을 포함한 제도경제학의 조류들은 다양한 이론적 입장에서 특정한 문제를 선별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종종 상이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점을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소 편의적이지만 전통적인 신고전학과 경제학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일반적 특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경제체제 또는 경제의 기본적 환경은 세 가지 요소, 즉 자본·노동·토지, 등 생산요소가 각 경제주체들간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초기부존상태, 생산요소와 최종생산물 간의 실현가능한 투

11) 최근의 경제이론 및 제도연구에서 제기되는 거래비용의 존재, 불완전정보 등 소위 '새로운 시장실패'를 고려한다면 시장실패는 예외적 상황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전통적으로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대안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윌리엄슨의 논의처럼 정부의 개입 이외에 전통적 경제이론에서 배제된 비시장적 조정기구에 의해 효율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

입-산출관계를 규정하는 기술,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¹²⁾ 그 다음 문제는 자원배분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것은 시장기구에 의해 달성된다. 결국, 자원배분은 초기부존조건하에서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 와 이윤극대화의 양대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경제성과의 차이는 모형내 세 가지 구조변수의 차이로 설명된다.

이와 달리 제도경제학은 시장기구 이외의 자원배분메커니즘을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적 조정과정을 시장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나아가 경제의 기본적 환경으로서 제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제도를 수동적·물리적 특성을 가진 주어진 여건이라기보다는 경제행위와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요인으로 간주한다.¹³⁾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비용경제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도경제학의 조류들은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대비할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⁴⁾ 첫째, 전통적인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엄격한 가정이 기각되거나 완화된다. 거래비용 개념의 도입은 비용이 들지 않는 교환, 마찰없는 경제체제라는 가정을 폐기하는 것으로서, 경제과정에 대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신고전학파의 기본적인 행태론적 가정인 완전한 합리성이 완화되고, 대신 제한된 합리성, 절차적·유기적 합리성 또는 규칙추종(rule following) 등과 같은 광의의 합리성 개념이 도입된다.

둘째,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균형상태를 강조하는 데 반해, 제도경제학은 변화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균형분석틀에 입각하더라도 균형을 과정의 최종결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태적 균형보다는 균형이 형성되는 인과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경제적 설명은 변화과정을 묘사하는 동태적·진화적 연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제도경제학이 수리적 경제모형보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로부터 경제현상을 진화적 방식으로 설명한다.

셋째,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시장기구를 강조하는 데 반해, 제도경제학은 여타의 제도적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제도경제학이 경제를 시장 이상의, 일종의 시스템으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경제행위의 조정을 시장기구뿐만 아니라 재산권, 관습 및 규준, 계약 등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제도와 관련지어 설

12) 青木昌彦·奥野政寛 編著 [5], pp. 23~26.

13)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제도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는 존재하지만, 주어진 여건으로서 수동적 환경에 불과하며, 그것들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간주되거나 무시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기구 이외의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론적 분석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 제도경제학의 특징으로는 대체로 Langlois가 제시한 세 가지 공통주제(common themes)가 일반적으로 제시된다. Hodgson [29], pp. 168~174, Samuels [48], pp. 571~575, Langlois [35], pp. 5~6, Eggertsson [22], pp. 10~15를 참조하시오.

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배분이라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주제를 다루더라도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설명변수 나아가 문화, 이데올로기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한다. 제도경제학이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과 같은 여타 학문분야와의 상호 교류, 즉 학제적 성격을 띠는 것은 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제도경제학의 제조류 및 상호비교

1. 제도경제학의 제조류

제도경제학은 이론적 입장이나 다루는 문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조류를 완전하게 포괄할 수 없지만, 대체로 네 가지 연구경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을 수정·확장한 신제도경제학(NIE), 경제학의 방법론과 개념을 정치영역에 적용한 '신정치경제학'적 접근, 경제체계를 기계론적 체계가 아닌 진화론적 체계로 파악하는 진화론적 접근, 그리고 다소 독자적인 프랑스의 제도연구의 조류가 그것이다. 네 가지 연구경향 내부에도 다양한 조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조류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¹⁵⁾

첫째, 신제도경제학은 거래비용, 재산권 및 계약관계를 이론의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구성된 연구경향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미 살펴본 거래비용 경제학 외에도 재산권적 접근, 계약이론적 접근, 그리고 신경제사적 접근을 포함시킬 수 있다.¹⁶⁾

재산권 분석(property rights analysis)의 기원도 코즈의 저작(Coase [15])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외부성 문제를 재산권의 미비 또는 잘못된 분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산권 분석을 경제학에 도입하였다. 이른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란 거래비용이 없다면 시장기능, 즉 거래당사자들간의 적절한 계약을 통하

15) 제도경제학의 개괄적 소개에 대해서는 Matthew [38], Hodgson [28] Eggertsson [22], Knudsen [34], Villeval [52], Samuels [48], Furubotn and Richter [25], 최인철 [4], 장하준 [3], 김석용 [1] 등을 참조하시오.

16) 신제도경제학(NIE) 내부의 다양한 조류들은 거래비용 개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적 접근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른 한편, 신제도경제학은 재산권을 중심으로 첫째, 재산권을 주어진 외생변수로 보고 상이한 형태의 계약 및 조직형태를 연구하는 입장(계약의 사전적 국면을 중시하는 주대리인 이론, 사후적 국면을 중시하는 거래비용경제학), 둘째, 재산권 자체의 진화를 연구하는 입장(D. North), 셋째, 재산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의 설계를 연구하는 입장(J. Buchanan), 넷째 재산권이 경제적 선택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입장(Barzel)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 기존의 재산권을 변경하지 않고도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성문제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에서 재산권의 분배가 유인체계(incentives) 및 경제주체의 행위, 따라서 사회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즈의 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알치안과 뎀세츠 등(A. Alchian, H. Demsetz, E. G. Furubotn, S. Pejovich)에 의해 기업 분석에 응용되었으며, 그 결과 재산권의 분배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다루는 미시적 재산권 분석이 전개되었다.¹⁷⁾

계약이론에서 기업은 개인들간의 자발적인 계약의 집합(nexus of contracts)으로 간주된다. 기업이 시장과 다른 것은 윌리엄슨처럼 권위 또는 위계적 명령에 의해 경제활동이 조정되는 조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은 공동생산과정(team use of inputs)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만-정보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편의 거래당사자에게 중심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구별된다(Alchian and Demsetz [6]).¹⁸⁾ 계약이론적 관점의 핵심적 요소는 거래당사자의 한편이 다른 한편에게 손실 또는 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계약을 통해 배제될 수 없다는 대리인문제(problem of agency)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주대리인이론(principal-agency theory)으로 전개된다. 1970년대 이후 발전한 정보경제학과 결합하여 주대리인이론은 비대칭적 정보와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실제문제를 다룬다(M. Jensen, W. Meckling, E. Fama, J. Stiglitz, B. Holmström).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이 불완전계약하에 사후적으로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분석하였다면, 주대리인이론은 사전적으로 복합적인 유인체계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인 계약의 문제를 다룬다.

노스토 대표되는 신경제사적 접근(new economic history approach)은 거래비용, 계약, 재산권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의 거래비용의 구조가 재산권의 형성 및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재산권의 구조가 경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역사연구에 적용·확장함으로써 신경제사적 접근을 발전시켰다(North, Thomas, Wallis, Eggertsson, Greif). North [42], [43]는 제도와 조직을 구별하고, 양자의 상호

17) 경제학에서 재산권 개념은 포괄적이다. 재산권에는 물질적 대상이나 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개인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다른 한편 재산권 분석은 각종 법제도의 분석에 적용되어 법경제학이라는 응용분야를 창출하였다.

18) 시장과 기업의 차이를 이와 같이 규정한다면 기업이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 주대리인이론으로 대표되는 계약이론적 접근이다. 불완전정보와 관련된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인체계를 어떻게 조정·설계할 것인가를 다룬다. 둘째, 팀이론적 접근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상정함으로써 구성원간의 이해갈등문제는 제외하고 구성원의 활동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다룬다.

작용을 통해 제도변화를 내생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도가 거래비용 및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윌리엄슨의 정태적 분석을 동화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제도경제학 내부에서 제도와 조직이라는 두 가지 분리된 경향을 총괄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신제도경제학을 전개하였다.¹⁹⁾

둘째, 신고전학파의 논리체계, 특히 합리적 선택모델을 정치영역에 적용하여, 정치과정의 시장개입문제, 정치제도, 사회적 규범과 관습 등을 분석한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또는 '신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의 연구경향을 들 수 있다. 신고전학파 또는 실증적 정치경제학이라 불리는 이러한 조류에는 집단행동이론과 지대추구이론 등이 포함된다.²⁰⁾ 올슨(M. Olson)은 공공재이론을 수정·일반화하여, 분권화된 개인들간의 상호작용 대신에 이익집단과 관련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분석하였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이익집단이 집단이익을 성취하려면 개인들의 이해와 집단의 이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선별적 유인제공이나 제재수단과 같은 유인체제, 즉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approach)은 정치행위의 참여자들이 사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사회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선택이론에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의도적인 계약의 직접적인 산물이며, 또한 비효율성을 낳는 '정부실패'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뷰캐넌과 툴록(G. Tullock)은 제도 자체를 결정하는 규칙, 즉 헌정적 질서를 설계하는 '헌법경제학'(constitutional economics)을 전개하였다.

셋째, 신제도경제학과 함께 제도경제학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1960년대 후반 신고전학파의 합리성과 균형가정을 비판하면서, 경제체제를 뉴턴적인 기계론적 체계라기보다는 다윈적인 진화론적 체계로 간주하는 진화론적 접근(evolutionary approaches)이다. 광의의 진화론적 접근에는 다양한 영역과 분석방법을 가진, 네오슈페터주의, (신)오스트리아학파, (구)제도주의적 전통, 진화게임이론적 접근 등을 포함

19) 노스는 제도변화를 설명하면서 학습과정, 경로의존성, 이메울로기의 역할 등 보다 포괄적인 요소를 도입한다. 또한 재산권의 설계와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산권을 통제하는 제도적 규칙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서구의 경제성장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분석영역을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하였다.

20) 1950년대 말, 1960년대부터 전개된 신고전학파 정치경제학은 국가를 일반이익의 구현자로 간주하는 케인즈주의적 이해방식과 달리, 사적 이익추구 모형을 정치연구에 응용함으로써 국가를 정치적, 판표, 각종 이익집단들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보는 국가관을 채택하고 있다. 거래비용이론, 집단행동이론, 그리고 지대추구이론과 결부된 공공선택이론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North [41]를 참조하시오. 다른 한편 윌리엄슨과 노스의 신제도경제학은 정부조직, 공공행정, 정치적 제도의 출현과 변화에 대한 분석에 응용됨으로써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집단행동이론 및 공공선택이론의 신정치경제학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시킬 수 있다.²¹⁾

네오슈페터주의(Neo-Schumpeterian)적 진화경제학은 사이몬(P. Simon)의 제한된 합리성(및 만족화가설)을 슈페터의 기술혁신 명제와 접합시킨 넬슨과 윈터의 선구적 저작(Nelson and Winter [40]) 이래, 기술혁신 및 확산, 산업 및 시장구조의 변화, 경기변동 그리고 경제성장의 장기파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동학(dynamics)을 강조하는 진화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는 불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적응하고 학습하는 주체이다. 경제주체의 행위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적정화에 입각한 선택의 결과로 설명되지만, 진화경제학에서는 특정한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적절한 루틴(routines)을 따른 결과로 간주된다. 따라서, 루틴은 진화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²²⁾ 기업은 신제도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에 기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조직 또는 계약의 집합체이지만, 진화경제학에서는 조직적으로 학습하고, 탐색하며, 적응하는 역사적 실체이다.²³⁾ 불완전한 적응과 우연적 발견에 의해 기업들간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반면에, 보다 나은 루틴과 이를 가진 기업들은 시장의 내부와 외부에서 선별되고, 이후 복제와 모방을 통해 확산된다. 즉, 집단적 상호작용(collective interactions)에 의해 기업들은 상이한 진화과정을 겪는다. 제도는 개별적 루틴과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구성하기 때문에 경제체제의 진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네오)오스트리아학파는 신고전학파의 기계적이고 정태적인 시각을 비판하면서, 제도의 생성, 지속, 소멸을 동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멩거(C. Menger)는 사회

21) 진화론적 접근에서는 베블렌, 맑스, 슈페터, 그리고 마샬까지도 그 선구자로 간주된다. Witt [55]는 진화경제학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네오슈페터주의적 전통(Schumpeter, Nelson, Winter, Dosi, Freeman, Silverberg, Soete), (네오)오스트리아학파(Hayek, Menger, Lachmann, Loasby), (구)제도주의적 전통(Dopfer, Gordon, Adams, Hodgson), 네오다윈주의자(Boulding, Hirschleifer, Saviotti, Metcalfe), 그리고 비선형동학, 시너지학(synergetics), 자기조직화 개념을 사용하는 접근(Arthur, Weidlich, Braun)이 그것이다. 진화론적 접근에 대한 개괄적 소개로는 Witt [55], [56], Dosi and Nelson [20], Nelson [39], Coriat et Dosi [17]를 참조하시오.

22) 다소 임의적인 행동이나 고도의 의도적 행위와 구별되는 루틴은 행위규칙의 묶음(a bundle of behavioral rules), 일의 집행에 있어 표준적인 운영절차나 경험법칙으로 정의되는데, 베블렌의 습관(habits) 또는 관례(customs), 사이어트와 마치(Cyert and March)의 경험법칙(rules of thumb) 등에 해당한다. 생물학의 유전자에 비유되는 루틴은 조직특유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조직에 걸쳐 공통적이기도 한다. Hodgson [28]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루틴을 제도라고 부른다.

23) 신제도경제학은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물질·인적 자본에 체화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에 의해 이전가능한 것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조직적 기술, 기술혁신 및 학습 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그 결과 성공적인 기업전략 및 경쟁우위라는 동태적 측면보다 거래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이라는 조직과 기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진화경제학에서 기업은 무엇보다도 기술혁신과 기술학습의 공간 또는 루틴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에 따른 시장실패가 아니라, 개별적인 기능, 지식, 숙련의 단순함을 넘어서 조직적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역량(competence)이 기업의 존재이유가 된다.

적 제도와 자연적 유기체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제도의 기원에 대한 '유기적'(organic)이론을 전개한다. 자연상태로부터 화폐와 같은 제도의 출현은 개인들의 행위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멩거가 제도의 기원에 관심을 가졌다면, 하이에크(F. A. Hayek)는 제도의 지속 및 진화에 관심을 보였다. 하이에크는 제도가 개인행동을 지배하는 행위규칙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규칙의 진화를 보다 성공적인 집단의 선별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즉, '집단적 선별 또는 도태'(group selection)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제도적 규칙이 시간에 걸쳐 어떻게 문화적으로 전파되는가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였다. 요컨대 오스트리아학파에 의하면, 개인들의 분권화된 선택에 의해 일련의 사회적 관습과 제도가 형성·진화하는데,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계획없이 출현하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이다.²⁴⁾

제도적 게임이론 또는 '신산업조직론'(new industrial organization)은 게임이론을 제도분석에 적용한 흐름으로써, 특히 관습(convention)의 분석에 공헌하였다. 게임이론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전략적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주체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역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순수조정게임(pure coordination game)에서 내쉬균형(Nash equilibria)의 해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완전 합리적인 경기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할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게 된다. 즉, 복수균형이 존재하거나 차적(sub-optimal)의 균형들만이 존재하는 게임상황에 대한 해결로서 제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게임이론을 제도분석에 사용한 것은 1950년대 말 순수조정게임 및 초점해(focal point solution)를 연구한 셸링(T. Schelling)의 연구와 사회적 문제의 해결로서 제도의 출현과정을 모형화한 Schotter [49]의 선구적 작업을 들 수 있다(R. Axelord, R. Sugden). 쇼터는 게임상의 전략을 행동규범으로 보고, 일회게임이 아니라 반복슈퍼게임(recurrent supergames)에서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경기자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관습에 따라 행동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논의에서 제도는 외생적이지만, 시장의 불완전성을 초래하는 교란적 여건이 아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정보, 특히 다른 주체들의 향후 전략에 대한 기대형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한 행위패턴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성과 최적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정태적 게임에서 제도, 특히 관습은 행위들간의 조정수단이자 복수의 내쉬균형들 중에서 선택기

24)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론 또는 자생적 질서론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제도는 설계되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부산물로 출현한다. 둘째,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이론보다는 주로 실천과 기술에 체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대부분은 단순하게 결합되거나 전달될 수 없다. 셋째, 자생적 질서가 근거하고 있는 규칙과 실천은 그것을 체현하고 있는 집단이 보다 성공적이고, 그 결과 다른 집단을 대체하게 되는 자연선별과정에 의한 문화적 진화의 결과이다. Gray [26], pp. 33~34 참조.

준이 되며, 동태적 게임에서 관습은 규범의 선택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행위의 규칙성이다(Schotter [49]).

신제도주의(Hodgson, Gruchy, Rutherford, Samuels) 또는 제도학과적 전통은 미국의 구제도학파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주체의 합리성으로부터 제도를 설명하기보다는 제도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 한다.²⁵⁾ 신제도경제학이 시장과 제도를 대립시키고, 제도를 시장과 조직 간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달리, 신제도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사고 및 습관(habits)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분석을 전개한다. 따라서, 신제도주의에 있어서 공식적인 조직보다 습관과 규칙 등 비공식적인 제도들이 경제주체들의 행위와 제도의 정의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넷째, 프랑스에서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인 연구동향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지만, 다소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조절이론과 공방시용이론이다. 먼저 조절이론(théorie de la régulation)은 1970년대 형성된 이론으로서 정치·사회·문화로부터 독립된 순수경제를 상정하는 입장과 반대로, 제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거시경제의 동학을 분석한다.²⁶⁾ 따라서, 제도는 경제적 현상임과 동시에 정치적·사회적 산물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의 불완전성과 같이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기보다는 조직화된 집단간의 갈등과 타협과정에서 유래하는 것이다.²⁷⁾

25) 본 연구에서 신제도주의는 주로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 이래 *Journal of Economic Issues*를 발행하는 진화경제학회(The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Economics: AFEE)나 유럽진화정치경제학회(EAEPE)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연구 조류를 지칭한다. 구제도학과 중 커먼스의 논의가 신제도경제학(NIE)의 논의에 영향을 주었던 반면에, 베블렌의 논의는 진화경제학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제도주의자 중 Hodgson은 네오습태적 진화경제학과 친화성이 있다. Samuels [48], pp. 575~576. Villeval [52], pp. 480~481 참조.

26) 조절이론의 개괄적 소개에 대해서는 Boyer [8], Boyer et Saillard [12]를 참조하시오. 불어 레귤라시용(régulation)은 영어 regulation과 어원이 같지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영어는 국가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입을 지칭하는 규제 개념인 데 반해, 불어는 모순·대립하는 여러 가지 힘이 얽혀있는 사회에서 질서 또는 일관성이 획득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정규화(regularization or normalization) 또는 governance에 가깝다.

27) 제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가별·지역별로 다양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조절이론은 제도형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제도형태에는 세 가지 형태, 즉 공동의 수준에서 결정되어 직접적이든 또는 매개적이든 강제를 통하여 해당집단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행동유형을 부과하는 법률, 규칙, 조례(제1형태-계약의 원리), 사적 주체나 집단들이 그들의 고유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상호의무를 규제하는 교섭의 결과로서의 타협(제2형태-협상의 원리), 그리고 법률이나 사적 협정없이 관습적 행동을 유발하는 가치체제나 표상체제(제3형태-무턴의 원리) 등이 포함된다. 조절이론은 무수히 많은 제도형태 중에서 경제활동의 영역에 따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섯 가지 형태, 화폐 및 금융체제(régime), 임노동관계, 경쟁체제, 국가의 경제개입형태, 국제체제로의 편입형태를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형태의 변화 및 상호관련성에 주목한다.

조절이론은 제도의 기원보다는 현존하는 제도 자체로부터 분석을 시작하며, 특정한 하나의 제도보다는 현실경제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제도들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특정 제도의 지속성은 효율성 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 즉 제도적 보완성에 의해 크게 규정된다. 그리고 사회경제체제 내부에 모순, 대립 또는 불균형은 항상 존재하며, 그 결과 이전의 제도적 타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성이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요컨대 조절이론에서 하나의 제도는 사회전체의 제도적 구성과 응집적일 때 지속가능하며, 제도의 최적성 또는 효율성이 그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1980년대 말 프랑스에서 논의된 콩방시용경제학(L'économie des conventions)은 신고전학파의 '표준적 이론'에 반대하지만, 제한된 합리성과 집단적 행위에 기초한 '확장된 표준이론'을 내재적으로 비판하면서, 학제적인 연구와 방법론적 종합을 추구하는 제도분석의 조류이다(O. Favereau, L. Thévenot, L. Boltanski).²⁸⁾ 콩방시용(conventions)은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이전에 부과되는 하나의 공통적 틀 또는 집단적 표상으로서, 명시적인 계약에 의거하지 않은 사전적인 조정양식을 지칭한다. 콩방시용은 효율성에 의거하기보다는 성공적인 행위규칙의 모방 그리고 이미 확립된 규칙에 대한 사회적 학습 등과 같은 수평적인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콩방시용이론은 동태적 게임의 비협조적인 해로서 이러한 제도 또는 규준을 도출한다. 콩방시용경제학은 주로 비시장적 조정 형태 그리고 공식적인 제도보다 비공식적인 제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제도경제학의 분류와 비교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에서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질적인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를 분류·비교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대비가 가능하지 않은 세부적인 주제보다 원리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8) 콩방시용경제학이라는 용어는 1989년 *Revue Économique*의 특집호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신고전학파 표준이론이란 합리성을 제약조건하에서 최적화로 경제활동의 조정을 시장으로 환원하는 이론을 지칭한다. 확장된 표준이론이란 이러한 관점을 조직, 제도의 영역으로 확장한 이론을 지칭한다. 콩방시용경제학은 콩방시용을 중심으로 한편으로 합리성과 규준으로 이분화된 사회과학이론간에 공통의 분석틀을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종합하려는 시도이다. Favereau [23] 및 국내의 개략적 소개로는 박명호 [2]를 참조하시오.

1) 제도의 정의와 분석 대상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제도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포괄적이다. 이론적 입장이나 논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Shotter [49]). 첫째, 제도를 규칙으로 간주하는 규칙론적 견해(rules view)이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따라서 사회적 결과를 규정하는 규칙의 집합(sets of rules)이다.²⁹⁾ 둘째, 사회적 제도를 사회적 행위의 규칙성(regularities)으로 간주하는 행태론적 견해(behavioral view)이다. 이 경우 제도는 다수의 개인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인간행동의 산물이다.³⁰⁾ 총괄하자면, 제도란 주체의 ‘주관적’ 사고 및 행동양식일 뿐만 아니라 주체들이 직면하는 ‘객관적’ 구조이기도 하다.

비록 제도를 파악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경제학의 조류들은 특정한 제도의 특정한 측면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을 분류·비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에 대한 개념적 분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노스가 제시한 정의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North [42]는 제도를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모든 제약으로 정의하며, 이를 다시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과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로 구분한다. 전자는 행위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일련의 규칙을, 후자는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내부구조를 지칭한다. 즉, 게임의 규칙(rules of game)으로서 협의의 제도와 경기자(players)로서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제도와 조직이라는 이분법은 대부분의 경우 조직을 여타 제도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수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분석과정에서, 예를 들어 제도변화가 조직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경우 조직이 용이하다. 그러나 노스도 지적하듯이, 제도와 조직 내부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제도는 법률, 재산권, 계약과 같은 공식적

29) North [42]의 정의로 대표되는 이러한 견해는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제도경제학, 신정치경제학 등에서 명시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견해이다. 따라서, 제도와 규칙은 대체로 호환되어 사용된다.

30) 행태론적 견해에는 멩거, 하이에크 등의 오스트리아학파, 쇼터등의 제도적 게임이론, 구제도학과, 신제도주의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사회적 행위규칙보다 관습과 같은 사회적 행위가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제도를 ‘유기적’으로 출현하는 비의도적인 행위의 규칙성으로 파악한다. 구제도학과는 제도를 사람들의 습관(habits) 또는 관습(customs)에 배태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널리 확산되어 지속성을 갖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방식으로 정의한다. Schotter [49]도 제도를 사회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규칙성으로 정의한다.

〈표 2〉 제도의 분류와 다양한 제도경제학의 연구대상

구분	정의	원리	제도경제학 조류의 주요 분석 대상
헌정적 질서 (constitutional order)	개인, 조직 및 제도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일련의 규칙	정치적 심의에 의한 합법성	공공선택이론(부캐넌) 거시적 재산권(노스)
제도 (institution)	조직 또는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규칙	기회주의행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감소 신뢰에 입각한 협력 집단간 타협	법경제학 조절이론
조직 (organization)	주체의 행위를 조직하는 규칙집합 및 지배 권력구조	외적 제도와 관습에 의거한 유인체계와 상벌규정	거래비용경제학 주대리인이론 미시적 재산권 분석
관습 (custom, routine, convention)	분권화된 상호작용에서 출현하는 자기강화적 기대와 행동	상호작용의 패턴	진화경제학 동태적 게임이론 공방시용경제학
습관 (habit or habitus)	사회화과정에서 채택하는 개인적 행위패턴	특정한 영역에 대한 적용 및 학습	구제도학과 신제도주의

자료 : Amable and Petit [7]. 〈표 3〉을 변형.

규칙에서 사회적 관습, 도덕적 신조와 종교적 믿음, 습관과 같은 비공식적인 규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조직도 기업, 국가, 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조직과 시장, 공동체와 같은 '비공식적 조직'이 존재한다(Furubotn and Richter [25]). 그리고 양자의 구분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명확해 보이지만, 동태적인 관점에서는 불분명하다(Amable and Petit [7]). 예를 들어, 어떤 행위패턴 또는 관습은 여타 집단들 또는 사회전체로 확장·일반화되어 보다 일반적인 제도로 전환될 수 있다. 나아가 행위자들은 그들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 즉 제도적 환경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형태들을 고려하면서 제도와 조직이라는 이분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두 가지 기준, 하나는 제도와 관련된 행위자들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인지 아니면 보다 광범위한 개인들 또는 집단인지에 따라, 다른 하나는 제도의 존속이 시간차원에서 어느 정도 고정 또는 제한되어 있는지에 따라 〈표 2〉와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Amable and Petit [7], Coriat and Weinstein [19]). 그리고 제도적용의 범위와 지속기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은 규칙집행(enforcement of rule)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 즉, 규칙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의식적인 것인지 무의

식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평가에 따른 자발적·비공식적 집행인지 아니면 법률과 같은 의무적·공식적 집행인지가 제도의 적용범위와 지속기간을 일정 정도 규정한다.

헌정적 질서(constitutional order)는 규칙을 만드는 규칙으로서, 무엇보다도 재산권 체계를 조직하고 보장한다. 개인들간에 체결된 계약과 달리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관성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노스의 거시적 재산권 분석이나 공공선택 이론 중 헌법경제학은 이러한 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협의의 제도를 집단 및 조직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규칙으로 정의한다면, 제도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광범위한 행위자들과 관련되며, 이러한 '제도화된 타협'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한 지속된다. 법경제학이나 조절이론, 경우에 따라 관계적 계약을 다루는 거래비용경제학은 이러한 수준의 제도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한다. 조직은 개인 또는 집단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을 가지며, 여타 조직에 비교해서 그 성과가 취약하다면 변화하게 된다. 거래비용경제학, 주대리인이론, 미시적 재산권 분석은 공식적인 조직 자체 또는 조직의 내부구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제도유형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규칙집행의 성격은 의식적·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적이다.

습관은 사회화과정에서 채택한 가치체계나 표상체계에 의해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이며, 새로운 학습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습관이 한 집단 또는 한 사회문화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되었을 때, 관습 또는 루틴이 된다. 상호작용의 패턴이 변화하면 구래의 관습은 폐기되지만, 공식적인 제도에 비해 과거의 관습이 오랫동안 잔존하는 경향이 있다. 습관과 관습은 규칙집행에 있어서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적 제재를 받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띤다. 집행의 의도성 측면에서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위인 반면에, 관습은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행위, 즉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구제도학과, 신제도주의, 진화경제학, 제도적 게임이론, 콩방시용경제학 등은 이러한 습관, 관습, 루틴을 주요한 제도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도는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제도적 접근들은 주요한 분석 대상이 어떤 제도유형인가를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요 분석 대상에서의 차이는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들이 기초하고 있는 방법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분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로 대

별될 수 있다. 방법론은 사회과학의 오래된 그러나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문제로서 그 내용은 논자들마다 차이가 있다(Rutherford [47]). 일반적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는 개인만이 고유한 자신의 이해와 목적을 가지며, 개인들의 집합체인 전체 또는 사회의 변화를 개인들의 행위의 결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현상은 궁극적으로 개인들,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념, 성향, 자원 및 상호관계에 의거하여 설명된다. 대조적으로 방법론적 전체주의(methodological holism)에서 사회적 전체는 그 부분 또는 개체들의 단순합 이상으로서, 부분의 행위 또는 기능에 영향을 주며 조건짓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행위는 전체로서의 사회시스템에 적용되는 거시적 또는 사회적 법칙, 그리고 전체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지위나 기능으로부터 연역되어야 한다.

1970년대 이래 현대 제도경제학의 성장은 구제도주의의 재현이 아니라,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신고전학과 경제학이론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제도경제학의 이론적 조류, 즉 거래비용경제학, 주대리인이론, 신경제사적 접근, 공공선택이론, 동태적 게임이론, (신)오스트리아학과, 콩방시용경제학 등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해 있다. 대조적으로 구제도학과, 신제도주의, 조절이론 등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상의 방법론적 차이는 제도분석에 있어 이론적 '근원'(primitive)에 대한 차이로 나타난다. 도식적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의사결정자가 이론의 근원이며, 제도는 이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즉, 제도는 개인의 속성 또는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되며, 궁극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의 선택의 결과이다. 반면에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기본적인 분석단위가 개인이 아니며, 제도 자체가 이론의 근원이 된다. 제도는 집단적 문제해결과정의 결과로 간주되며, 제도가 주체의 인식과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한 문제가 된다.

대체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하는 입장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원자론적인(atomistic) 개인을 상정한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개인 또는 개인의 선호가 환경에 의해 변화할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대부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즉, 추상적 개인이라는 사고는 개인선호의 외생성이라는 추가적인 가정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제도는 개인의 의식적 선택의 결과인 공식적 제도이며, 주어진 선호라는 가정 때문에 개인의 목적, 기호 및 선호의 형성 또는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관습 등의 제도유형은 무시된다.³¹⁾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취하는

31) 개인주의는 방법론적 측면과 존재론적 측면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사회적 속성에 대한 존재론적 전체주의를 취할 수 있다. Rutherford [47], pp. 27~37을 참조하시오. 따라서, 방법론적 개인주의 내부에서 원자론적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주어진 모든 제도적 준거

〈표 3〉 방법론에 따른 제도경제학 제조류의 분류

방법론 분석단위 합리성 개념	방법론적 개인주의		방법론적 전체주의
	의사결정자	거 래	제도 / 집단적 행동/ 사회관계
극대화 합리성	신고전학과 경제학 게임이론	공공선택이론 주대리인이론	
제한된 합리성	정보경제학 제도적 게임이론	재산권이론 거래비용경제학	
절차적 합리성 적용적 규칙추종	오스트리아학과 진화경제학	노스의 신경제사 콩방시용경제학	구제도학과 신제도주의 조절이론

자료 : Knudsen [34], 〈표 11.1〉을 변형.

입장은 대체로 조직과 같은 집단적 실체를 기본적인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제도를 설명할 뿐 아니라 개인선택의 형성 및 변화를 제도와 연결짓는다.³²⁾ 따라서, 이들의 제도분석에서 주체의 인지적·행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과 관습 등 비공식적인 제도가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 방법론과 관련하여 인간주체에 대한 행태론적 가정, 특히 합리성 개념은 제도경제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주대리인이론, 공공선택이론(및 법경제학) 그리고 게임이론은 최적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주체, 따라서 완전한 합리성 또는 극대화 합리성(maximization rationality)을 상정하고 있다. 개인들은 그들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위를 조정하는 전통적인 주체이다.

거래비용을 도입하는 거래비용경제학, 재산권이론, 노스의 제도경제사, 정보경제학(Akerlof, Stiglitz) 그리고 제도적 게임이론 등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사이몬(H. A. Simon)에 의해 도입된 이 개념은, 경제주체가 '의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의미에서 합리적'(intendedly rational

를 제거하거나 개인의 측면에서만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에서 개인의 사고는 사회의 문화적·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자론적 개인주의와 구별된다.

32) 방법론적 전체주의 내부에도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사회적 실체에 의해 개인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았던 1940년 이래 구제도학파의 '문화적 결정주의', 정치·사회·문화적 측면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구조 및 과정과 유리된 채 경제현실의 제한된 부분만을 분리·취급하는 것을 비판하는 '포괄주의'(comprehensivism), 그리고 세계는 유기체와 같이 통합된 전체이기 때문에 요소들간의 상호연관된 내적 관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유기체론'(organicism)을 의미할 수도 있다. Mäki [36], pp. 25~27 참조.

but only limitedly so)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의도성을 강조함으로써 합리적 지향을 수용하지만,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거래 및 정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편적 극대화는 불가능하며 부분적 극대화, 즉 만족화(satisfying) 또는 경제화(economizing)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경제학, 오스트리아학과, 노스의 신경제사, 콩방시용경제학, 조절이론도 불완전한 합리성 개념에 입각해 있지만,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또는 사회적 규범과 관행을 따르는 규칙추종을 강조한다. 절차적 합리성은 선택결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실체적(substantive) 합리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선택과정 또는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수한 의사결정규칙을 준수한다. 오스트리아학과 및 진화경제학의 유기적(organic) 합리성 또는 규칙준수(rule following) 등은 절차적 합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방법론적 입장과 합리성 개념을 기준으로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를 분류할 수 있는데, <표 3>은 Knudsen [34]의 분류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다.³³⁾

3) 제도진화의 원리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는 다소 도식적이지만, 제도의 형성메커니즘과 선별메커니즘이라는 제도진화의 원리를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형성메커니즘, 즉 제도가 어떻게 확립되는가는 제도진화의 원리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이에 대해서 최소한 두 가지 대립적인 설명방식이 존재한다(Furubotn and Richter [25], Rutherford [47]). 하나의 극단은 제도가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한다는 관점이다. 이 경우 제도는 어떠한 합의나 법적 강제없이 스스로 조직된, 즉 의도하지 않은 자기조직화과정(self-organisation process)의 산물이다. 제도의 형성을 자생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네오)오스트리아학파의 핵심적인 논지이다. 구제도학과내에서도 베블렌은 정치적 과정과 관련해서 제도진화의 비의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오슈페터적인 진화경제학은 기본적인 사회적 관습 또는 루틴의 출현을 종종 '우연적 발견'의 산물로 간주한다.

다른 극단은 제도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제도는 일종의 집

33) Knudsen [34]은 한편으로 합리성 개념(극대화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과 설명방식(균형모형, 기능적 설명모형, 경제변화모형)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 분석의 초점(계약 또는 기술)과 분석단위(거래, 의사결정자)에 따라 제도연구의 조류를 분류하고 있다. Knudsen [34], pp. 270~272 참조.

단적인 구성적 활동(collective constitutional activity)에 따라 인위적·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제도형성의 의도성 또는 인위적 설계의 역할은 공공선택이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특정 당국(의회, 정부관료, 기업, 팀 등)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제도적 구조를 설계·도입할 수 있다. 재산권 접근, 거래비용경제학, 주대리인이론 등도 대체로 의도적 선택의 결과로 제도의 기원을 설명한다.³⁴⁾

제도형성의 의도성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제도경제학의 조류는 진화와 설계에 기초한 설명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학파의 진화적 합리주의(evolutionary rationalism)와 공공선택이론의 '계약론적 구성주의'(contractarian constitutionalism)가 양극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이론적 입장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들이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합리성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공공선택이론이나 거래비용경제학 등은 주로 법률이나 사적 계약과 같이 의식적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공식적 규칙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오스트리아학파와 진화경제학 등은 시장, 관습 등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비공식적인 규칙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공공선택이론은 거래비용이 없고 완전예측이 가능한 표준적인 신고전학파의 분석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완비되고 완전한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다. 대조적으로 절차적 또는 제한된 합리성을 상정하는 오스트리아학파나 진화경제학의 세계에서 법률이나 사적 계약은 불완전할 뿐 아니라, 완벽한 제도의 설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각각의 제도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되는 특정한 제도와 그 이론적 분석틀의 차이로 설명가능하다.

둘째, 선별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는 두 개의 집단, 즉 거래비용경제학, 재산권이론, 주대리인이론, 신경계사, 제도적 게임이론, 오스트리아학파를 하나의 집단(집단 1)으로 구제도학파, 신제도주의, 조절이론을 다른 집단(집단 2)으로 구분할 수 있다(Villeval [52]).

집단 1에서 제도의 진화는 대체로 효율성에 기초한 자연선택 또는 도태(natural selection)에 의해 규정된다. 신제도경제학(NIE)은 제도의 진화라는 동태적 과정보다 제도의 출현과 존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의 존재는 시장 또는 조직의 실패와 같은 조정문제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이를 초래하는 거래비용과 정보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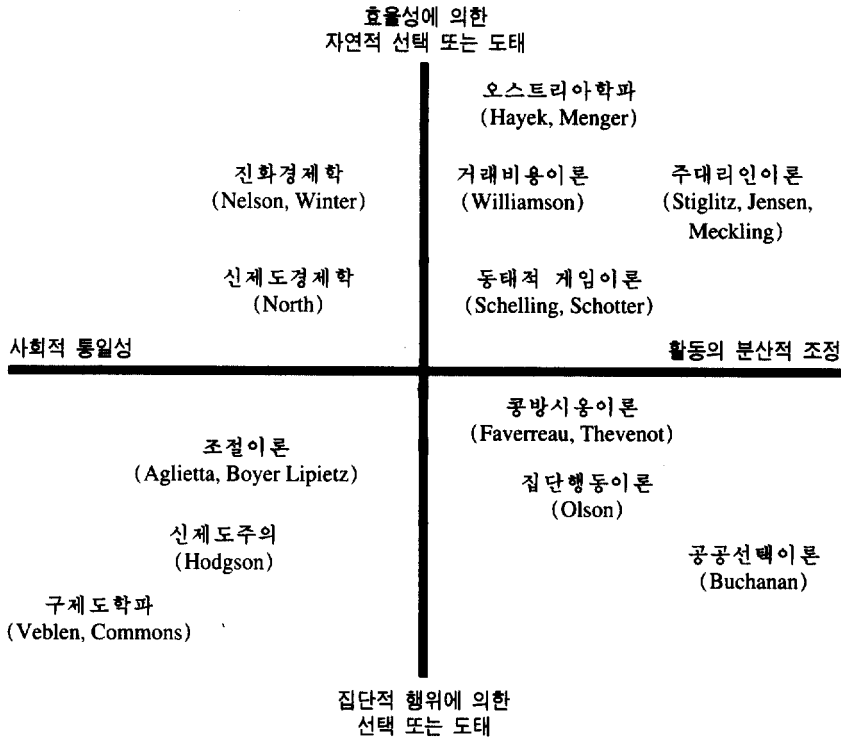
34) 재산권 접근은 재산권의 분배가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효율적인 재산권 제도를 어떻게 확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이지 않다. Williamson [53], [54]도 제도형성이 의도적인지 기능적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 거래비용의 계산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도주의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는 제한된 합리성과 불완비계약을 강조하는 그의 논의와 대립한다. 따라서, 특정한 지배구조가 거래비용을 경제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기능적 설명도 가능하다.

대칭성이 제도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종적으로 제도의 진화는 거래비용의 비교분석에 의한 선택 또는 조정문제의 해결에 준거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해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유기적 제도'의 진화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된다. 즉, 효율적인 행위규칙과 같은 제도는 그것을 실천하는 집단이 보다 성공적이며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을 대체한다는 '집단선별'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는 자연적 선택의 대상이며, 경제적 효율성과 정합적이다. 제도적 게임이론에서 관습 및 규칙과 같은 제도는 반복게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입증된 전략을 채택하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의 결과인데, 일단 확립되면 자기강화적(self-enforcing)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진화게임에서 효율성의 규범은 시행착오과정, 보다 좋은 결과에 대한 게임참가자들의 모방에 의해 유지된다. 요컨대 집단 1에서 시장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상호작용은 효율성에 입각한 선별기제(selection mechanisms)로 작용하며 제도의 진화를 규정한다.³⁵⁾

집단 2에서 제도의 동태적 변화는 학습, 현존하는 제도들간의 갈등, 사회적 투쟁 그리고 우연적 발견의 산물이기 때문에 효율성에 입각한 자연선택보다는 집단적 행위에 의한 선택이 제도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Villeval [52]). 구제도학파에게 있어서 협상의 원리라는 인위적 제도선택이 결정적이며, 제도의 진화는 '의례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간 그리고 산업적 논리와 금융적 논리간의 긴장과 결부된 누적적 인과관계'에 기인한다.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분석은 단순한 비용의 계산에 근거를 두지 않으며, 습관과 규칙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인식에 준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조절이론에서 제도는 갈등과정으로부터 유래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며, 제도의 지속성은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 또는 '제도형태들의 보완성'에 의해 크게 규정된다. 따라서, 제도의 진화에는 제도들간의 불일치와 모순이 결정적이며, 제도는 이전의 제도적 타협이 불안정하게 되면 변화하게 된다. 집단 2에서는 제도의 진화는 종종 효율성과 무관하게 과거의 선택, 현재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 그리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경로의존적으로 자신을 재생산' 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의 산물이며, 그 과정은 대체

35) 집단 1에서 효율성에 기초한 선별기제는 제도의 기능에 대한 견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도는 만족문제의 해결,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의 감소, 시장의 역기능에 대한 보상, 행위자의 불완전한 계산 능력에 대한 대응, 자생적 균형의 부재나 복수균형의 존재에서 발생하는 조정문제의 해결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Villeval [52], pp. 483~484 참조. 즉, 제도는 그것이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에 의해 존재가 설명된다. 네오슈페터주의 진화경제학의 경우는 효율성과 관련된 진화의 원리에 있어서 다소 이중적이다. 진화경제학에서 제도의 진화는 변이(variations) 및 선별(selection)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된다. 한편으로 시장 내·외부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선별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경로의존성 및 빈도의존성에 의해 비효율적인 제도가 선별·지속되기도 한다. 노스의 신경제사접근도 원칙적으로 효율성에 입각해 있지만, 제도변화를 이데올로기, 경로의존성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림 2〉 제도경제학 제조류의 분류



자료 : Villeval [52], Boyer(1998).

로 비결정적, 개방적, 그리고 비가역적인 것으로 간주된다.³⁶⁾ 총괄적으로 제도의 진화 원리에 있어서 집단 1은 제도의 유효성 또는 경제적 효율성에 의한 선택을 강조하는 반면에, 집단 2는 집단적 교섭을 통한 인위적인 제도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는 행위의 분산적 조정을 강조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사회적 통일성 또는 응집성을 강조하는 전체주의라는 방법론적 차원을 수평축으로 나타내고, 시장에서 효율성

36) 집단 2에서 제도의 기능은 위험에 대처하며, 비대칭적인 권력하에서 사회질서를 조직하는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제도는 집단적 행동의 규칙과 관련해 기대 또는 타협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타협과정에서 공식적인 조직, 이해집단 및 개인들간의 협상 및 재협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구제도학파와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인식된 정보의 선별과 변형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조절이론에서 제도는 축적의 규칙성을 형성하며, 조절양식의 재생산을 뒷받침한다. Villeval [52], pp. 483~484 참조. 다른 한편, 제도가 특수한 이익집단을 위해서 봉사하며 다른 집단 또는 사회전체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기도 한다. 공공선택이론에서 국가 및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 특히 압력집단 및 분배적 연합(distributive coalitions)의 영향에 대한 지대추구접근은 그와 같은 함축을 갖는다. 구제도학파도 또한 베블렌의 유한제급 및 금융엘리트에 대한 분석에서 잘 나타나듯이, 제도를 다른 집단 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익의 회생을 대가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에 의한 선택과 집합적 행동에 의한 인위적 선택이라는 제도의 진화와 도태의 원리를 수평축으로 표시하여 제도연구의 조류를 분류한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의 고찰을 통해 제도경제학의 일반적 특징을 제시하고, 다양한 제도류를 분석 대상, 방법론, 제도진화의 원리를 기준으로 분류·비교하였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암묵적으로 거래비용이 없는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시장기구 이외의 현실적 제도들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순수 이론모형이 아닌, 현실 및 정책적 함축의 분석에서 제도적 측면이 전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라도, 제도는 경제모형에서 설명변수로도 피설명변수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간주되거나 무시되었다. 현실적으로 제도적 구조는 유인체계와 거래비용, 따라서 경제행위와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경제학은 이와 같이 무시되었던 제도의 영역을 정당한 경제분석 대상으로 파악하고, 경제학에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경제과정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통적인 경제학의 범위와 분석능력을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경제학에 대한 기존의 소개는 주로 신제도경제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신고전학과이론의 수정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고, 따라서 제도경제학의 진모를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신제도경제학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리를 제도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관된 분석틀을 갖추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문제와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 제도의 기원을 주어진 개인으로부터 설명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불가피하게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규칙이나 규범을 전제해야 하며,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상태'의 합리적 개인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논리적·현실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Field [24], Hodgson [29]). 기업에 대한 윌리엄슨의 거래비용분석은 최초의 자연상태로서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태초에 시장이 있었다'), 시장 자체도 재산권등과 같은 사회적 규범, 관습, 제도화된 교환관계, 정보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제도일 수밖에 없으며,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기원은 아니다. 제도적 게임이론에서 게임의 구조와 보수 등 기본적인 규칙이 처음부터 전제되지 않으면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복게임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되는 게임 이전의 게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무한회귀의 문제(problem of infinite regress)에 부딪힌다. 비록 노스가 제도를 제약의 체계(a system of

constraints)로 간주하고 그것이 주체들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제도가 개인들의 선호체계, 따라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내생적 선호체계'의 연구로 진전되지는 못했다(장하준 [3]). 제도는 제약의 측면을 갖지만, 주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규칙성을 창출함으로써 선호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행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자원'으로서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의 제도주의적 전통과 연결된 행태론적 접근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의 논의도 조직적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기술혁신과 확산,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 등과 같은 동태적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진화경제학적 접근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제도경제학을 고찰함으로써, 다양한 제조류간에 이론적 보완성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도경제학의 전반적 조류를 개괄하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비교한 것은 단순한 차이를 확인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현재 발전과정에 있는 제도경제학의 다양한 조류간에 대화와 토론의 전제를 확인하고 상호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거래비용경제학과 조직이론 및 사회학 간의 대화, 1980년대 후반 이래 이전에는 서로 무시하였던 신제도경제학과 구제도주의 계승자들 간에 토론의 개시, 신제도경제학과 진화경제학 간의 교류, 조절이론과 진화경제학, 국방시용이론 간의 공동토론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교류, 나아가 보완적 이론들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규정, 차이점과 유사점의 확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론적 통합을 전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이한 이론적 접근간의 상호교류와 이론적 접목은 상호보완적 논의를 가능케 하며, 제도연구 나아가 경제학의 발전을 자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제도경제학의 제조류들에 대한 분류와 비교는 이론적 측면에서 개략적인 대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도경제학은 제조류간에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흐름 내부에서조차 논자마다 분석의 초점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과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미 제시한 분류와 비교는 제도경제학의 제조류에서 대조적인 입장과 그 내부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상의 구별을 파악하는 지침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경제학은 경제주체, 제도 및 경제적 진화과정에 대한 방법론적이고 일반적인 논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논의전개에 비추어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분류와 비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보다 세부적인 논점 또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차후의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김석용, 『제도·기업시스템·한국기업의 진로』, 삼영사, 1999.
2. 박명호, “제도, 조직, 그리고 역사”, 『사회비평』, 12, 1994.
3. 장하준, “제도경제학의 최근 동향”,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44(1), 1996.
4. 최인철, “경제제도와 기술적 효율성”,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5. 青木昌彦·奥野正寛 編著, 『經濟システムの比較制度分析』, 東京大, 1996, 기업구조연구회 외 역,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연암사, 1998.
6. Alchian, A. and H.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1972, in L. Putterman and R. S. Kroszner(eds.) [45].
7. Amable, B. and P. Petit, “On Institutions, Innovation and Growth,” mimeo, 1999.
8. Boyer, R., *La Théorie de la Régulation : Une analyse critique*, La Découverte, 1986, 정신동 역, 『조절이론』, 학민사, 1991.
9. _____, “State and Market : A New Engagemen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1996, in R. Boyer and D. Drache(eds.) [11].
10. _____, “The Variety and Unequal Performance of Really Existing Markets : Farewell to Doctor Pangloss?” 1997, J. R. Hollingsworth and R. Boyer eds.(1997).
11. Boyer, R. and D. Drache(eds), *States Against Markets : The Limits of Globalization*, Routledge, 1996.
12. Boyer, R. et Y. Saillard(eds), *Théories de la Régulation. L’Etat des Savoirs*, La Découverte, 1995.
13. Boyer, R. and J. R. Hollingsworth, “The Variet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ir Complementarity in Modern Economics,” 1997, in J. R. Hollingsworth and R. Boyer(eds.) [31].
14. Coase, R., “The Nature of the Firm,” 1937, in L. Putterman and R. S. Kroszner (eds.) [45].
15. _____,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960.
16. _____,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8(2), May, 1998.

17. Coriat, B. et G. Dosi, "Évolutionnisme et Régulation. Différences et Convergences," 1995, in R. Boyer et Y. Saillard(eds.) [12].
18. _____, "The Institutional Embeddedness of Economic Change. An Appraisal of the 'Evolutionary' and 'Regulationist' Research Programmes," *CREI Working Papers*, 96-01, 1996.
19. Coriat, B. and O. Weinstein, "Firms and Institutions in the Innovation Generation," Mimeo.
20. Dosi, G. and R. R. Nelson, "An Introduction to Evolutionary Theories in Economics,"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4, 1994.
21. Dosi, G. et al.(eds),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Pinter publishers, 1988.
22. Eggertsson, T.,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3. Favereau, "Conventions et Régulation," 1995, in R. Boyer et Y. Saillard (eds.) [12].
24. Field, A., "Macroeconomic Norms, and Rationa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2(4), July, 1986.
25. Furubotn, E. G. and R. Richter, *Institutions and Economic Theo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26. Gray, J., *Hayek on Liberty*, 2nd edn., Basil Blackwell, 1986.
27. Hage, J. and C. Alter, "A Typology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nd Networks," 1997, in J. R. Hollingsworth and R. Boyer(eds.) [31].
28. Hodgson, G. M., *Economics and Institutions : A Manifesto for a Modern Institutional Economics*, Polity Press, 1988.
29. _____, "The Approach of Institution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XXVI(1), March, 1998.
30. Hollingsworth, J. R. and R. Boyer, "Coordination of Economic Actors and Social System of Production," 1997, in Hollingsworth, J. R. and R. Boyer (eds.) [31].
31. Hollingsworth, J. R. and R. Boyer(eds),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32. Hollingsworth, J. R., Schmitter, P. C. and W. Streek eds., *Governing Capitalist Economies. Performance and Control of Economic Sectors*, Oxford University

- Press, 1997.
33. Jensen, M. and W. Meckling,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1976, in L. Putterman and R. S. Kroszner(eds.) [45].
 34. Knudsen, C., "Modelling, Rationality, Institutions and Processes in Theory." 1993, in Mäki *et al.* (eds.) [37].
 35. Langlois, R. 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 An Introductory Essay." in R. N. Langlois ed., *Economics as a Proc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36. Mäki, U., "Economics with Institutions : Agenda for Methodological Enquiry." 1993, in U. Mäki *et al.*(eds.) [37].
 37. Mäki, U. *et al.*(eds.), *Rationality, Institutions and Economic Methodology*, Routledge, 1993.
 38. Mattew, R. C. O., "The Economics of Institutions and the Sources of Growth," *The Economic Journal*, 96, 1986.
 39. Nelson, R., "Recent Evolutionary Theorizing about Economic Chang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 1995.
 40. Nelson, R. and S. Winter,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Havard University Press, 1982.
 41. North, D. C., "Three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stitutions," in D. C. Colander(ed.),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42. _____,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이병기 역,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1996.
 43. _____, "Institutions and a Transaction-cost Theory of Exchange." in J. E. Alt and K. A. Shepsle eds., *Perspectives on Positive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44. Powell, W. W., "Neither Market or Hierachy :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 Behavior*, 12, 1990.
 45. Putterman, L. and R. S. Kroszner(eds.), *Economic Nature of the Firm. A Rea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46. Richardson, G.,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Economic Journal*, 82, 1972.

47. Rutherford, M., *Institutions in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48. Samuels, W. J., "The Present State of Institutional Economic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4), 1995.
49. Schotter, A.,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50. _____, "The Evolution of Rules," 1986, in R. Langlois(ed.), *Economics as a Proc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51. Vanberg, V. J., *Rules and Choice in Economics*, Routledge, 1994.
52. Villevall, M. C., "Une Théorie Économique des Institutions?" 1995, in R. Boyer et Y. Saillard(eds.) [12].
53. Williamson, O. E., *Markets and Hierarchies*, Free Press, 1975.
54. _____,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1985.
55. Witt, U., "Evolutionary Economics : Some Principles," 1993, in U. Witt eds, *Evolution in Markets and Institutions*, Physica-Verlag.
56. _____(eds.), *Evolutionary Economics*, Edward Elgar, 1993.
57. OECD, *Technology and the Economy : The Key Relationships*, Paris, 1992,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연구회 역, 『과학과 기술의 경제학』, 경문사, 1995.